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 603 호
------	---------

제출년월일 : 1999. 8. 1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 나) 1997년9월11일 대통령령제15480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 침해가 없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공숙박업을 설치토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 지정(안 제3조)
- 나) 기존건축물의 개축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다) 안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경우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 설치 조례제정 관련사항 통보 : 도지역 58214-1426('99.12.31)
- 나) 조례안 재의요구 : 도법무 11250-10017('98.5.16)

4. 입법예고 : '99.8.16 ~ '99.9.6(20일간)

5.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가능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숙박업등의 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군수가 별도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 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5킬로미터 이상인 지역

2. 지하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3. 호소수질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 상류로부터 유효거리 500미터 이상인 지역
4. 먹는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5.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6. 하천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7.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인 지역
8. 문화재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또는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9.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단,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은 50미터 이상인 지역)
10. 주민등록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11. 법정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12. 군사시설보호구역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13.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구역 또는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14.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

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 (단,수도법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제4조(기존건축물의 개축) 이 조례시행전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동일용도, 동일면적 이내의 개축에 한한다.

제5조(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시설설치에 대한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그 제한지역등을 결정하기 위한 숙박업등의 시설설치제한지역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또한 고시된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인 이내
2.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교수 4인 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④ 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공보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위치 및 범위(1:25,000도면에 표시와 열람용 1:5,000도면 비치)
3. 행위의 제한내용, 지번별 조서 등

제6조(거리의 환산) 설치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인구 및 가구) 인구 및 가구는 전년도말의 행정리·동의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타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